

신용카드변칙거래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 추진해 온 신용카드사 용 확대정책은 사회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불법 유통시키는 사례가 있어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문란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국세청에서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9,800여곳에 이르며, 이들을 이용한 변칙거래는 대부분 탈세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요소로 선진세정, 선진사회 구현을 위하여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될 불법 행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위장가맹점 색출 및 실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 국세청에서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으로 2001년도 중에도 3,890개의 위장가맹점을 적발함
- 위장가맹점에 대하여는 고발 등 대응조치를 강화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거래내역과 신용카드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수집
 - ⇒ 신용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실사업자를 확인
- 위장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것입니다
- ※ 위장가맹점 등 변칙거래자에 대한 처벌 규정(여신전문금융업법)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 등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행위	
•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정한 행위	
•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위장가맹점과 거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

- 집대비 등의 손금 불산입
 - 재화 등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 등은 집대비로 보지 아니함
 - 매출전표 등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함
- 매입세액 공제 배제
 -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공

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나, 위장가맹점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배제

-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제외
 -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상금(복권 당첨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 근로소득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배제
 -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2002. 11. 30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경우는 동 초과금액의 20%(5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나, 신용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신용카드 변칙거래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실시

-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는 세금탈루로 이어져 공평과세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을 방해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많은 조사인력을 투입,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 나갈 것임.

- ◇ 위장가맹점 신용카드 이용자를 통한 주기적인 확인조사로 실사업자를 색출하여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불성실 혐의자가 체크될 수 있는 업무처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
-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운영과 적발된 위장가맹점에 대한 고발 등 대응 조치 강화
- ※ 위장가맹점 고발자 포상금(건당 10만원) 제도 실시 중임

자료제공 및 문의 —————
국세청 납세홍보과(02-397-1397)
E-mail : ho25400@nts.go.kr